

『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5월 10일

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(법률 제17769호, 2020.12.29)으로 주민세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(안 제6조~제8조)

(개정 전)		(개정 후)
균등분(개인)	⇒	개인분
균등분(개인사업자)	⇒	사업소분
균등분(법인)		
재산분		
종업원분	⇒	종업원분

-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세의 세세목 명칭을 5개에서 3개로 변경하고,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며 과세체계와 세율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